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0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타당성조사 후 보관해야할 서류 및 자료와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 기간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2. 00. ~ 2020. 3.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법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을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을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한다.

제14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산지전용기간을 말한다.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재 적치·운반 시설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u> <u>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 의견 관련 서류</u> <u>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u> <u>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u>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제5항----- ----- ----- --.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제4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 ① 법 제9조제5항-----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생 략)	제13조(산지특별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u>산지전용기간</u> 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 ----- ----- <u>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u> -----.
⑥ 법 제20조제2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20조제2항제1호아목-- ----- ----- ----- -----.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⑫ (생 략)	제14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u>산지전용기간</u> 을 말한다.
<신 설>	⑭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

	<u>설”이란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자재 적치·운반시설을 말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4141